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9. 30.

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24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2022년 1월 6일자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시행에 의거, 자치구 사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,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(안 제4조~제5조)
- 다. 학교(어린이집)·사회·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(안 제6조~제8조)
- 라. 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(안 제9조)
- 마. 환경교육과 관련한 재정지원, 홍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 라. 입법예고 (2022. 8. 11. ~ 8. 31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이고,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책무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학교(어린이집), 사회, 사업자 환경 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

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현재 서울시에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9개 자치구1)에 지역환경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.

-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,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,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¹⁾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 자치구(9개); 영등포, 도봉, 마포, 서초, 종로, 구로, 서대문, 은평, 중구

참 고 자 료

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환경교육"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2. "학교환경교육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·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나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라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- 3. "사회환경교육"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- 제4조(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- ②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- **제13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1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 · 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- 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- 4.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- 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- 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- 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 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"지역환경교육센터"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
- 제28조(경비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어린이집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9. 30.

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計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 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(안 제3조)
- 나. 위원회 구성 시 성비율 초과 금지(안 제4조)
- 다. 명확한 임기 규정(안 제5조)
- 라. 해촉 범위 확대(안 제7조)
- 마. 재정지원 조문 신설 및 수당 등 조문 내용 개정 (안 제13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환경정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 라. 입법예고 (2022. 8. 11. ~ 8. 31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 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는 환경관련 상위법 제·개정 사항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해 자치구 단위의 선도적 환경정책에 관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·자문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 정책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, 위원회의 심의·자문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,

-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신설하고, 위원의 해촉 범위에 장기 불참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,
-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실천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(시행 2021. 7. 6.) 및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(시행 2022. 3. 25.)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해 자치구 단위의 선도적 환경정책시행 및 늘어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·자문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, 성별을 고려한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환경정책기본법

제19조(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환경 종합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(이하 "시·군·구 환경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, 2016. 1. 27., 2021. 1. 5., 2021. 6. 15.>

- 1.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- 1의2.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
- 2. 환경기준 ·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
- 3.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 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·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- 5.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- 6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- 7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·검사발전기 본계획 등 환경시험·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- 8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제10조제 1항 및 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, 재질·구조의 개선,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

- 8의2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 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
- 8의3.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연순환·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-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 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 를 둘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21. 1. 5.>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,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조례로 정한다.